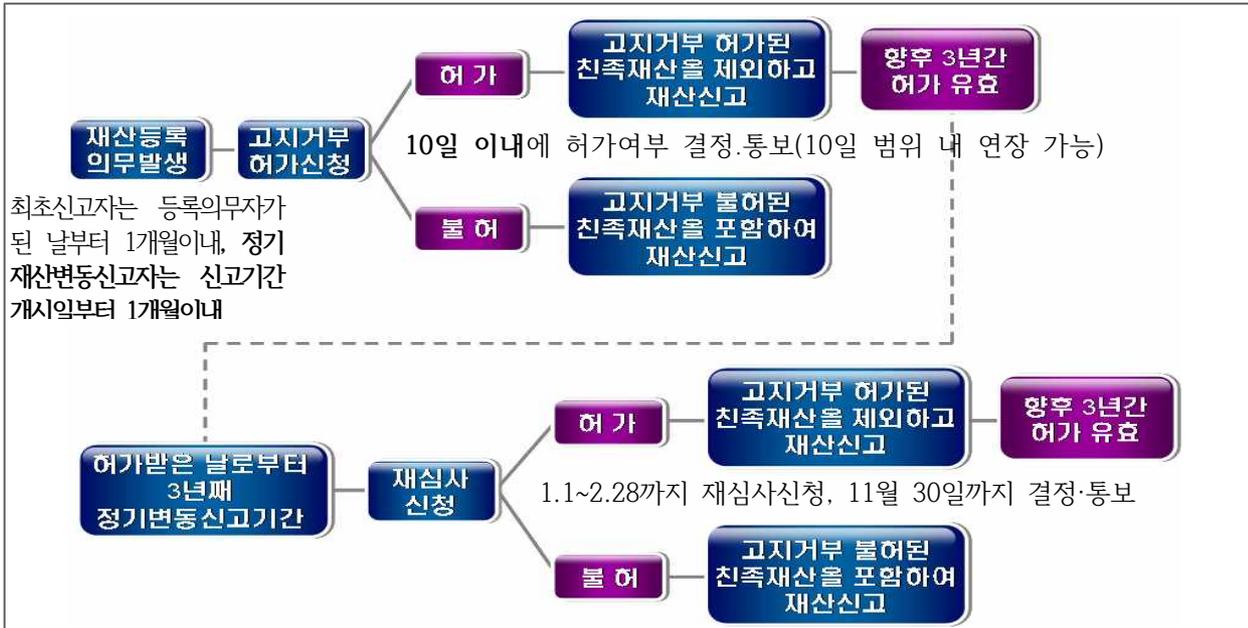


고지거부 신청안내

1

고지거부

□ 신청절차



□ 2023년 고지거부 심사기준(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)

대 상		심 사 기 준
직 계 존 속	독립 생계	○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
	타인 부양	○ 타인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-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○ 타인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- 타인으로부터의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소득이전이 증명(통장입금 내역 등)되면 허가
직 계 비 속	독립 생계	○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, 등록기준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하면 허가

※ ‘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’ 이란? 최소 1년간 정기적으로 발생한 소득의 월 평균액이 2023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
□ 독립생계 소득기준

○ 2023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도시지역	1,246	2,074	2,660	3,240	3,798	4,336	4,864
농촌지역	872	1,452	1,862	2,268	2,659	3,035	3,405

※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, 천원 미만은 절사

※ 농촌지역 구분 : 고지거부 대상자의 주소지가 '읍·면'이면 농촌지역이며, 대도시에 포함되어도 동일하게 적용

- 외국 거주자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1인당 국민소득(GNI) 비율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가능

○ 농지규모별 농업소득

(단위 : 천원)

경지규모	0.5ha 미만	0.5-1.0ha 미만	1.0-1.5ha 미만	1.5-2.0ha 미만	2.0-3.0ha 미만	3.0-5.0ha 미만	5.0-7.0ha 미만	7.0-10.0ha 미만	10.0ha 이상
단위 환산 ha → m ²	5천m ² 미만	5천-1만m ² 미만	1만-1.5만m ² 미만	1.5만-2만m ² 미만	2만-3만m ² 미만	3만-5만m ² 미만	5만-7만m ² 미만	7만-10만m ² 미만	10만m ² 이상
농업소득	3,897	8,096	17,118	15,507	22,875	30,416	36,523	45,724	44,639
월 소득	325	675	1,427	1,292	1,906	2,535	3,044	3,810	3,720

※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 통계자료

○ 시중 CD금리 기준일 : 2023년 정기변동신고대상자 중 신규허가 및 재심사 신청자는 '22. 12. 31. 기준 적용. 반면, 수시신청자는 등록기준일 현재 CD금리 적용(※금융 및 부동산 자산의 소득환산 시 참고)

□ 소득 계산법

○ 총 소득 = ①일반소득 + ②재산의 소득환산액

① 일반소득 = 근로소득 + 연금소득 + 임대소득 + 사업소득 + 농업소득 등

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= 금융 및 부동산 자산(거주 주택제외) 공시가격
× 소득 환산율(기준일 CD 금리)

※ 일반소득이 없는 재산의 경우만 소득환산(중복금지)

인정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

일반소득	<p><농·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지자경증명(읍 면사무소, 동주민센터) 또는 농지원부, 출하증명(공제내역 기재) 등 <p><사업소득이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득금액 증빙서류: 국세청 소득금액증명(사업소득자용) 등 <p><근로소득이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득금액 증빙서류: 국세청 소득금액증명(근로소득자용),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재직기관) 또는 소득확인서(재직기관) 등 ▶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<p><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금수급증명서(수령 기간, 월 수령 금액 기재) 등 <p><금융소득이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장사본(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) 등 -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<p><임대소득이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득금액증명(국세청), 통장사본(이체내역) 등
재산소득	<p>※ 직계존속만 해당</p> <p><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일 현재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 <p><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일 현재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잔액증명서, 유가증권잔고증명, 통장사본 등
기타	<p>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, 연락두절·행방불명, 이(재)혼 등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 신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인사유서, 형제·친척의 진술(인우증명), 사실관계 증빙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주민등록초본, 법원판결문 등

※ 민원서류 관련 인터넷사이트(<http://www.gov.kr>)

- 정부24 :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, 농지원부 등

※ 토지·건물 공시가격제공 사이트 :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(<http://www.realtyprice.kr>)